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2. 24. 김선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2.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3.10.)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민 의원)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감내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필수 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을 도모하여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의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 또는 공감의 표현 등이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며,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방지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